

2006년도 추계 학술강연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회장 성열구)와 대한설비공학회 대전·충청지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대전·충청지회 등 설비관련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10월 24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2006년도 추계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특히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희 상임이사가 발표한 「설비건설 관련법령 개선방안」을 통해 건산법 개정 현황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노력 등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 황영환 부장은 「적산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을 통해 실적공사비제도의 추진배경과 운영방향,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제도, 예정가격 결정기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설비건설 관련법령 개선방안」과 「적산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을 게재한다.

설비건설 관련 법령상 현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 김 경 회

I. 최근 건설경기 현황

◎ 8.31, 3.30 부동산대책으로 민간건설경기 위축과 최저가낙찰제도 확대시행 및 BTL사업시행으로 공공공사 수익률 악화 → 건설경기 크게 위축

- 건설수주물량이 수도권은 7.3%, 지방은 22.7% 감소 (2006.6월)

- 폐업신청이 일반건설 387개사, 전문건설이 3,147개사 (2006.8월)

13,000개사의 3% 35,000개사의 9%

◎ EITC 도입에 따른 임금지급조서 제출로 4대보험료 납부 강화

- 2006년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의 소득을 매분기 관할세무소에 의무신고토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시행(07년부터 미신고금액의 2%를 가산세 부과)

- 국세청에서는 제출된 건설일용근로자의 자료로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정보공유를 추진함에 따라 미가입된 사업주에게 보험료 소급추징(3년) 가능

※ 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근로자(생활보호대상자, 극빈층)의 연간소득을 파악하여 일정비율의 현금을 지급하여 소득 양극화 해소

- 건설업자 부담금 최고 인건비의 11.44% (근로자 부담분 대납시 18.18%)

◎ 건설노조활동 심화로 전문건설업계 경영여건 악화

- 포항지역 건설플랜트 불법파업에서 보듯이 건설노조 활동이 심화 되고 있음
- 단체협약시 임금은 50%로 상향조정되고 생산성은 50% 하향되어 결국은 100% 노임이 상승

◎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최근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민간주택까지 확대코자 하는 정부방침으로 건설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

II. 우리협회 최근 주요사업 추진실적

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원가반영 의무화 및 정산제도 도입 추진

◎ 추진배경

- 2006년 건교부고시에 의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공사원가(국민연금 노무비의 54%, 건강보험 노무비의 56%)에 일부 반영되었으나, 민간발주공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그러나, 공공공사에서도 최저가낙찰제 시행과 하도급과정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분만 원가에 반영(낙찰률 하락으로 삭감)되고 있으며, 또한 일용근로자

의 가입거부(소득감소)로 사업주가 대납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경영부담이 크게 가중

◎ 추진내용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건설현장 사회보험료 확보방안 회의”시 공공공사의 보험료 정산제도 건의
- 우리협회 주관, 4개 건설단체(설비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공동연명으로 관련부처에 보험료 정산제도 조속 도입 탄원서 제출(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 본회 회장, 서울시회 회장,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4대 사회보험료 원가반영 건의
- 본회 회장, 건설교통부장관과 간담회에서 공공공사 및 민간발주공사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및 보험료를 미반영한 원도급자 처벌조항 신설 건의

◎ 추진결과

- 건설교통부에서는 공공 및 민간발주공사에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및 보험료 미계상시 원도급자 시정 명령 등의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6. 7. 25)
- 재정경제부는 공공공사에서 납입보험료 확보 방안으로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도입 및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07년 상반기부터 시행예정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공공공사계약 입찰시 발주기관이 보험료를 계상한 금액을 고지하고, 입찰시 이를 조정할 수 없게 한 후 계약이행에 따라 정산(국가계약법시행령제73조)

나. PQ신인도 심사시 건설재해율 반영제도 개선 추진

◎ 추진배경

- PQ심사시 건설재해율을 반영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산재발생시 원도급자의 산재은폐 강요로 하수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자비로 산재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 발생

◎ 추진내용

- PQ신인도에 건설재해율 반영제도 개선을 위하여 청와대 등 관련부처에 탄원서 제출(청와대, 국무총리실, 재정부, 노동부, 건교부, 감사원)
- 노동부 등 관련부처 수차례 방문 우리협회 의견 건의
- 재정경제부 주관, 정부계약제도 개선 T/F팀에 참여하여 PQ신인도의 건설재해율 제도 개선 건의

◎ 추진결과

- 재정경제부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재해건수에 따라 -2 ~ +2점의 재해율 반영에서 0 ~ +2점으로 감점 폐지
- 산재은폐시 은폐건당 -0.2점씩 최대 -2점 감점토록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시행 (200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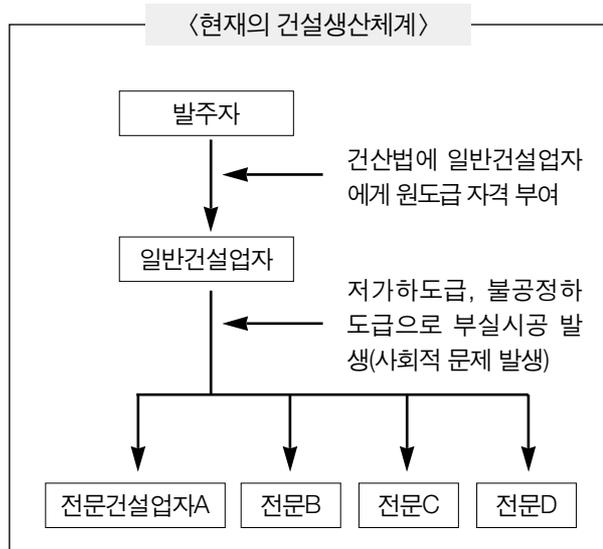
Ⅲ. 건산법개정안(겸업제한폐지)에 대한 대응방안

겸업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12조)

- 1975년도에 전문건설업이 도입되면서 건설업의 업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
- 일반건설업종은 종합적인 공정 및 시공관리를, 전문건설업종을 현장시공을 전담하도록 역할을 분담
- 겸업제한제도 도입으로 일반·전문건설업 양 업계는 균형발전과 상생의 발판이 되어 왔음

가. 현행 건설생산체계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전문은 일반건설업을 일반은 전문건설업을 영업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 일반은 원도급, 전문은 하도급으로 건설생산에 참여
 - ※ 일반·전문성의 전문성 및 영업범위 보호를 위해 겸업제한제도 시행
- 하도급과정에서 저가하도급, 불공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유발되고 발주자의 예산 낭비요인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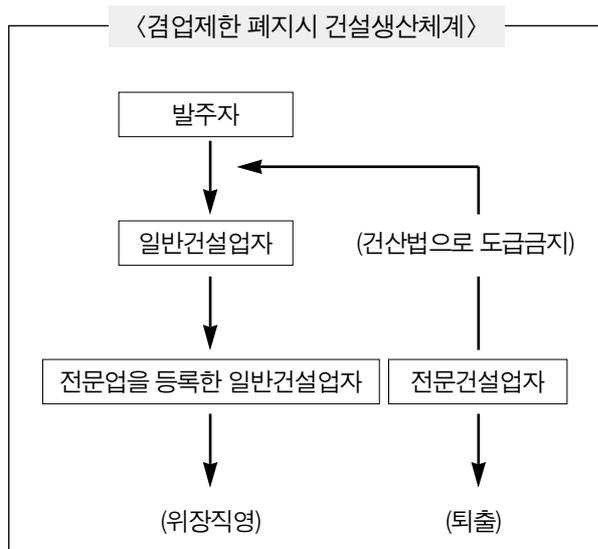


나. 단순히 겸업제한만을 폐지시 문제점

- 일반건설이 전문건설의 영역인 하도급시장까지

독점

- 겸업이 허용되면 자본, 인력이 월등한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을 손쉽게 등록하여 일반건설시장(원도급시장)은 물론이고 전문의 하도급시장까지 진입하여 독점
-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등록이 거의 불가능하고, 등록을 해도 시공실적 등 장벽이 많아 입찰참여가 불가능
 - ※ 기계설비공사와 시공기술이 유사한 산업·환경설비공사는 PQ로 발주
- 전문건설은 원도급 입찰참가 기회가 거의 없으며 하도급시장까지 일반에게 빼앗겨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함
- 단순히 겸업제한만을 폐지할 경우 일반건설업자에게 전문건설의 하도급시장까지 내주는 일방적인 개정안임



다. 건설법 개정관련 우리협회 대응 내용

1. 건설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협회 각 시·도회 회원사, 설비공학회 등 기계설비 협의회 각 단체, 대학교수 등이 건교부에 겸업제한 폐지 반대와 설비공사 분리발주 의견 제출

2.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설비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개최 배경

- 설비회원사, 학회 등 단체, 대학 설비과 교수 등이 민원을 제기하자 건교부에서 장관과 설비업계 간담회 개최 요청

○ 간담회 개최

- 일 자 : 2006.9.1일(금) 07:30분

- 참석자 : 협 회 - 본회회장 외 6명

건교부 -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외 6명

- 건의내용

- 겸업제한 폐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정부방침으로 겸업제한 폐지시 설비공사 분리발주, 개·보수공사에서 설비·전문간 공동도급 허용으로 설비건설업자의 원도급 시장 참여 건의
- 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및 전기공사처럼 제도화 보장 건의

3. 선진화된 건설생산체제로 개선 건의(국회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생산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는 법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개정 필요

- 단순복합공사(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불필요한 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의 입찰참여가

가능토록 전문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허용

-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가 가능토록 CM제도 도입

※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전문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 기능인력의 고용안정과 부실시공 방지(독일, 일본 등 선진외국의 건설생산방식)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시행

-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면서 설비공사 등 일부 주요공종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사 수행

- 건설산업기본법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계약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문화 되어있는 제도임

IV. 건설하도급 문제점 및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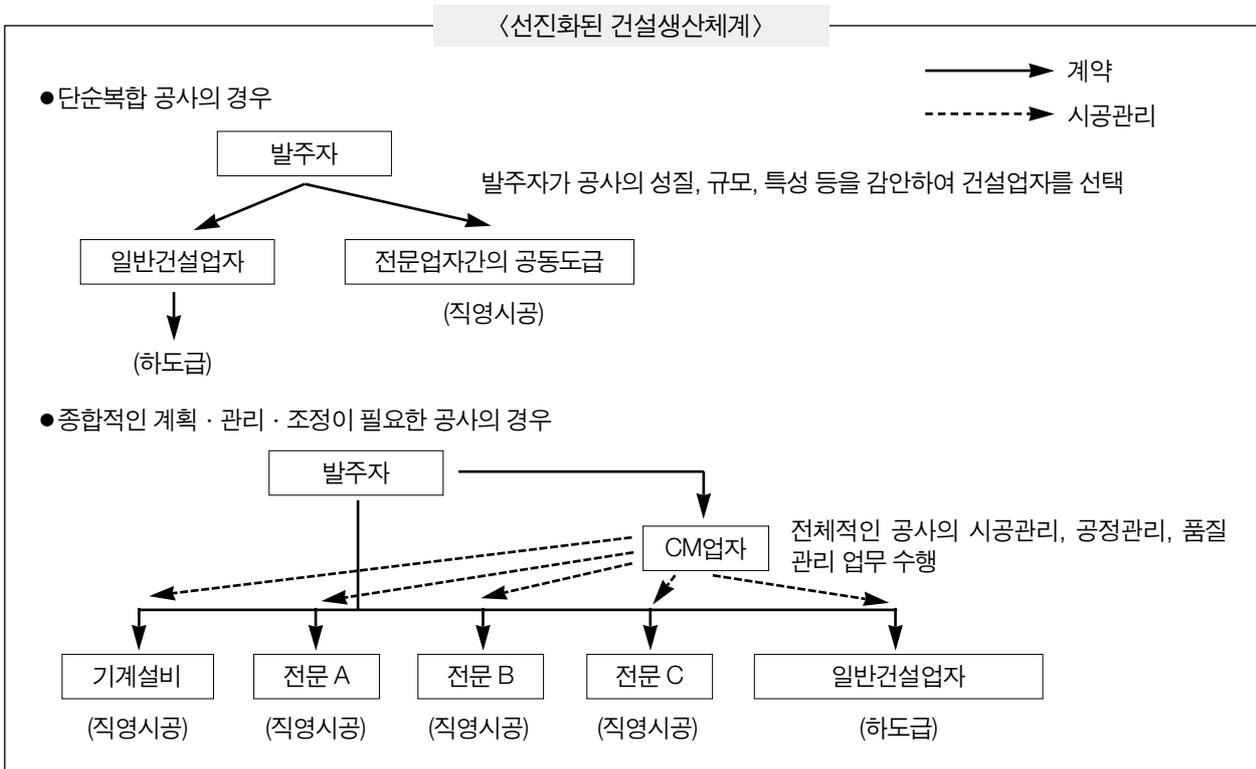
가. 현황 및 문제점

1. 하도급과정의 불법·불공정행위 성행

○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2만불 근접, OECD회원 등 전체적인 위상은 선진국 대열 → 하도급 현상은 아직도 60~70년대의 후진국 수준

○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시공능력 평가액 30억 이상으로 전체 일반건설업체(13,000개사)중 약 5,500개사(42%)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규모 원도급업체가 더 큰 문제임(준법의식 희박)

○ 2003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조사결과 91%가 불공정하도급 사항이고 방문 건설현장 중 70% 이상이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하고 있음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점검 결과 적발내용

적발유형	적발내용 (건)		
불법하도급	44	9.7%	90.9%
하도급계약 미통보 및 지연통보	175	38.6%	
지급보증서 미교부	141	31.1%	
공동이행의 위반등 계약조건 미이행	52	11.5%	
건설기술자 현장미배치 또는 현장 이탈	41	9.1%	
계	453	100%	

2. 하도급금액의 끝없는 추락

- IMF금융위기와 최저가 낙찰제가 하도급금액의 끝없는 추락 유도

낮은 원도급수주 → 낮은 실행예산 편성(본사차원 가이드라인) → 하도급 경쟁 유도 → 하도급자 출혈경쟁 → 실행보다 더 낮은 금액 결정 → 직접공사비 이하 하도급 수주 → 무리한 공기단축, 시간외 작업, 자재비 절감 등 부실시공요인 산재 → 하도급자 한계경영, 채산성·경영난 악화 → 기술개발, 하도급 육성은 요원 → 건설산업 경쟁력 상실, 건설산업의 기반 붕괴

3. 하도급과정 중 불법행위에 대한 불감증

- 하도급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불감증
 - 하도급 관련 연구 부재(대학, 연구소, 정부, 단체 등)
 - 하도급 계약시스템 부재 → 부대입찰제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있으나, 부대입찰제는 2004년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가 남아 있으나 실제 시행된 사례는 없음
 -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실효성 상실, 하도급 지급보증서 교부율 저조, 이중계약 강요
 - 원·하도급자 간에 하도급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원도급자에게 제출(90% 이상) 원도급자는 하도급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자에게 교부(10~20%) → 원·하도급자간 상호 보증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저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으나 원·하도급계약을 사인간의 계약이라하여 사용여부는 임의사항 → 권장사항으로 규정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사용치 않고 원도급자에게 유리한 자체하도급계약서를 만들어 사용 → 현장설명서, 특약조건 등에 불공정계약조항 삽입

나. 개선방안

1. 시장질서가 무너진 왜곡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불법·불공정행위 차단

- “규제”, “시장경제이론”, “사인간의 계약 존중” 등의 논리와 불법·불공정행위와는 분명하게 구별·인식 필요 →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개입은 당연

2. 하도급 분야에 대한 문제인식 및 관심 제고

- 현장설명에서 하자이행까지 하도급 전 공정에 걸쳐 만연되고 있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모두가 공감·인식하여 공론화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
- 정부, 발주기관,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하도급 불법·불공정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발표(공청회, 세미나 등)하고, 해결방안 모색 필요

3. 하도급관련 제도(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 최저가(Lowest Price) 낙찰제도의 개선
-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도로 전환하여, 저가

- 투찰을 원천적으로 배제
- 하도급금액을 높게 주는 업체가 낙찰에 유리하도록 점수를 배정
- 낙찰이후 하도급관련제도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
-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개선
 - 원도급 계약금액의 82%를 예가기준으로 전환
 - 낙찰이후 하도급관련제도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
- 하도급자 사전 지명제도 적극 도입(미국, 독일과 같이)
 - 입찰시 하도급 할 공종, 금액, 사업자 등을 명기
 - 하도급금액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에 유리하도록 점수배정

-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
-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현행 시평 30억 이상 → 모든 공사)
 - 하도급법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건설업체(30억원 미만)는 전체 업체중 42%로 중소기업의 준법의식 결여와 함께 불법·불공정행위 극심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도급자에 대하여 공공공사 입찰시 우대

알아두면 좋은 수자원 주요 DATA

■ 댐·발전 분야

항 목	수치DATA		기준시점	비고
전국 댐 유효 저수량	138	억m ³ /년	2001년 현재	댐갯수(1,206개)
다목적댐 용수 공급량	10,884	백만m ³ /년	2006년 현재	장흥댐 포함
다목적댐 홍수조절 능력	2,197.6	백만m ³ /년	2006년 현재	장흥댐 포함
다목적댐 개수	15	개	2006년 현재	소양강,충주,횡성,안동, 임하,합천,남강,밀양, 대청,용담,주암,섬진강, 부안,보령,장흥
수력발전댐 개수	957	개	2001년 현재	한국의 댐 2002
다목적댐 수력발전 시설용량	1,044.4	천kW	2006년 현재	장흥댐 포함
다목적댐 유역면적	22,268.0	km ²	2006년 현재	장흥댐 포함
다목적댐 최대 저수량(소양강댐)	2,900	백만m ³ /년	2006년 현재	발전사업통계 2005
다목적댐 최대 발전시설용량(충주댐)	412	천kW	2006년 현재	발전사업통계 2005
다목적댐 최대 용수공급량(충주댐)	3,380	백만m ³ /년	2006년 현재	발전사업통계 2005
댐용수 요금단가	47.93	원/m ³	2006년 기준	발전사업통계 2005
우리 공사 발전소 전력공급량(2005년)	2,206	백만kWh	2005년 기준	발전사업통계 2005
우리 공사 발전소 기준 시설용량	1,014.9	MW	2005년 기준	발전사업통계 2005
우리 공사 발전시설의 전국 발전시설 비중	1.63	%	2005년 기준	발전사업통계 2005